

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

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통의년월일 : 92년 6월 15일

(제7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)

수정동의자 : 우 범 성 위원

찬 성 자 : 정 진 철 위원

류 명 화 위원

안 재 원 위원

김 인 식 위원

유 영 혼 위원

1. 수정이유

- 은영기금 사용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은수증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 확충 및 운영등에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현 실정으로 보아 교육시설의 설치 확충은 더이상 필요치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은수증사자의 교육운영등에 사용토록 할이 타당할것으로 판단.

2. 수정주체들자

- 은수증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·확충 및 운영 → 은수증사자의 교육운영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u>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</u> <u>제31조의 2의 규정에의한과징금</u> <u>징수조례</u>	<u>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</u> <u>제31조의 2의 규정에의한과징금</u> <u>징수 및 운영조례</u>	(개정안과 같음)
<u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징수하는 과징금의 부과,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 <u>(신설)</u>	<u>제1조 (목적) -----</u> <u>-----</u> <u>-----</u> <u>과징금의 부과, 징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	<u>제1조 (목적)</u> <u>(개정안과 같음)</u>
<u>제 8조 (운영기금조성) 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(이하 "과징금"이라 한다)의 일부를 차등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운영기금 (이하 "운영기금"이라 한다)으로 적립한다</u>	<u>제 8조 (운영기금조성) 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(이하 "과징금"이라 한다)의 일부를 차등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운영기금 (이하 "운영기금"이라 한다)으로 적립한다</u>	<u>제8조 (운영기금조성)</u> <u>(개정안과 같음)</u>
<u>제 9조 (운영기금적립 및 관리)</u> <u>①도지사는 과징금 징수액 중 당해연도 과징금은 운영계획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드액을 적립한다.</u>	<u>제9조 (운영기금적립 및 관리)</u> <u>①도지사는 과징금 징수액 중 당해연도 과징금은 운영계획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드액을 적립한다.</u>	<u>제9조 (운영기금 적립 및 관리)</u> <u>(개정안과 같음)</u>

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
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 제3호중 "교육시설의 설치·확충 및 운영" 을 "교육운영" 으로 한다.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(신 설)	<p>② 운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여 적립한다.</p> <p>③ 운영기금관리로 생기는 과실은 기금에 편입한다</p> <p>제10조 (운영기금의 사용)</p> <p>운영기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4항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 (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) 한다.</p> <p>1.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</p> <p>2. 교통안전시설의 확충</p> <p>3.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·확충 및 운영</p> <p>4.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</p> <p>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	<p>제10조 (운영기금의 사용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<u>운수종사자의 교육 운영</u></p> 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
제11조 (시행규칙)	<p>(상 략)</p> <p>제11조 (시행규칙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1조 (시행규칙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